#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허10392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상무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김선영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3. 1. 11. 2021당10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하다)을 취소하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블라인드 고정구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0. 1. 30./ 2020. 10. 13./ 제30-1079068호
- 3) 디자인권자: 피고(D은 2020. 10.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가 2022. 10. 13. 피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블라인드 고정구
    - 2) 디자인의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1. 4. 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027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반면, 차이나는 부분은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 거나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 아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주금속판의 형상, 고정금속판의 형 상,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이 결합하는 방식 및 결합된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년 6월경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작하였고, 2019년 10월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경 원고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변형한 확인대상디자인을 납품받은 후 2020, 10, 20,경부터 피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를 판매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ㄱ'자와 'ㄷ' 자 금속판의 결합 및 머리가 큰 볼트의 결합)이 유사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3. 파단

###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1) 대상 물품의 동일 ·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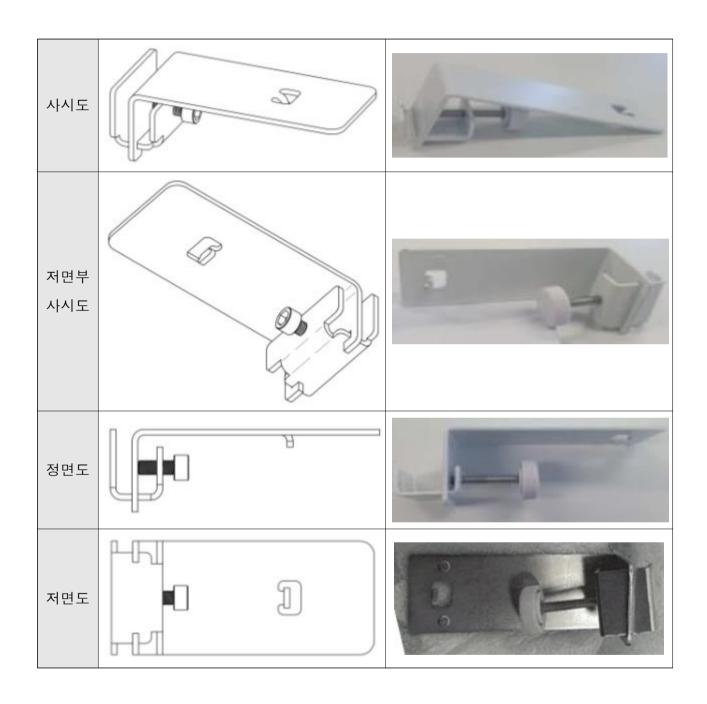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한 후 블라인드 고정용 클립을 결합시킬 수 있어서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블라인드 고정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1)
------------	-----------

<sup>1)</sup>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와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사진([도 4])을 대비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디자인의



#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전체적으로 측면이 개

배면도는 을 제6호증에 의한다.

방된 '¬'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주금속판'2'과 '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고정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주금속판은 상대적으로 긴 '수평판'과 상대적으로 짧은 '수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판의 하단에는 고정금속판을 끼워 결합할 수 있는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고, 수평판의 끝 부분에는 직사각 형상의 '통공'과 '걸림돌기'가 작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고정금속판은 '안쪽 세로판', '바닥판', '바깥쪽 세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 세로판 중앙에원 모양의 '통공' 1개가 작게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원기둥 형상의 머리가 큰 볼트가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 나) 차이점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결합부는 ' '와 같이 수직판의 하단 부분 중 일부가 개방되어 'T'자 모양으로 개방된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부는 ' '와 같이 수직판의 하단 부분에 가로로 긴 홀이 형성

되어 있는 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판에는 '아 '와 같이 바깥쪽 세 로판과 연결되는 부분에 '단턱'이, 안쪽 세로판과 연결되는 부분에 '요입홈'이 각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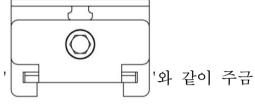
<sup>2)</sup>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클립 고정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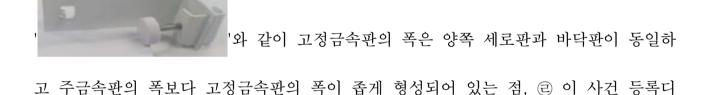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바닥판에는

'와 같이 단턱과 요입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속판의 폭과 고정금속판의 양쪽 세로판의 폭이 동일하고 고정금속판의 바닥판의 폭은 양쪽 세로판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인의 고정금속판은 ' '와 같이 바깥쪽 세로판의 높이가 안쪽 세로판의 높이에 비해 높고 양 세로판의 높이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고정금속판은

'와 같이 안쪽 세로판과 바깥쪽 세로판의 높이가 같고 양 세로판의 높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3)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걸림돌기는

''와 같이 통공 중 수직판

과 가까운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걸림돌기는



'와 같이 통공 중 수직판과 먼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 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측면이 개방된 '¬'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공통점 ①), 'ㄷ'자 형상인 고정금속판의 바닥판 부분이 '¬'자 형상인 주금속판의 수직판 하단 부분에 끼워지는 형태로 결합하며(공통점 ②), 안쪽 세로판 중앙에 납작한 원기둥 형상의 머리가 큰 볼트 1개가 결합되어 있는 점(공통점 ③)은 종래 블라인드 고정구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sup>3)</sup> 원고는, 고정금속판 중 바닥판의 폭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쪽 세로판의 높이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 인은 양쪽 세로판의 높이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는 위와 같은 세로판의 높이로 인한 차이이므로 별도의 차이점으로 보지 않는다.

(2) 한편 양 디자인은 결합부의 형상(차이점 ①), 바닥판에 단턱과 요입홈의 형성 여부(차이점 ①), 바깥쪽 세로판과 안쪽 세로판의 높이 차이 유무(차이점 ②), 주 금속판과 고정금속판 폭 길이의 차이 유무(차이점 ②), 걸림돌기의 형성 위치(차이점 ⑤)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①에서 ⑥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 차이점 ①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을 분리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들을 분리할 수 없고,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 저면에서 관찰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금속판의 바닥판 부분이 관찰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수직판이 연결되어 보인다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이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차이점 ①으로 인하여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을 생산한 후 결합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판의 결합부를 고정금속판의 요입홈에 끼운 후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의 위치를 조절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정금속판의 바깥쪽 세로판을 수직판의 결합부에 끼운 후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의 위치를 조절하므로 양 디자인은 결합 방식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나 사용 할 때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 제작하는 과정(원고는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이 끼워진 상태로 확인대상 디자인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설치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단턱과 요입홈은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단턱과 요입홈 형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점 ©이 블라인드 고정구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F)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블라인드고정구는 바깥쪽 세로판과 수직판 사이에 창틀을 위치시킨 후 창틀의 두께에 따라 볼트로 죄어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시키고, 걸림돌기에 블라인드 고정용 클립을 결합시켜사용하는데, 위와 같이 블라인드 고정구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바깥쪽 세로판과 걸림돌기를 인식하기 어려워 바깥쪽 세로판의 높이와 안쪽 세로판의 높이가 동일한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점 ©, 걸림돌기가 형성된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점 ©은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차이에 불과하다.

(라) 차이점 ②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모두 바닥판의 폭이 수직판의 폭보다 좁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쪽 세로판의 폭이 바닥판의 폭보다 넓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양쪽 세로판의 폭이 바닥판의 폭과 같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물품을 자세 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마) 원고는, 차이점 ①, ①으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저면에서 관찰 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잡한 심미감을, 확인대상디자인은 간결한 심 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 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오른쪽 영상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각 표현된 물품



을 창틀에 설치한 후 저면에서 관찰할 경우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의 형상,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이 끼워져 결합하는 형상 및 머리가 큰 볼트의 결합 형상으로 인한 형상이 유사하고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차이점 □, ○과 같은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①에서 ②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①, ②, ③으로 인하여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 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 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 4) 워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을 볼트로 결합하여 창틀에 구멍을 뚫지 않고 블라인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20. 1. 27.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1인 가구를 위한 커튼, 블라인드 설치 멀티브라캣 매직쏙 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갑 제5호증, https://blog.naver.com/smilejobss/221786122526)에 '비타공 커튼용 멀티브래킷'에 관한 디자인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브래킷은





'와 같이 별개로 구성된 '주금속

판의 수직판'과 '고정금속판의 안쪽 세로판'을 겹치도록 위치시킨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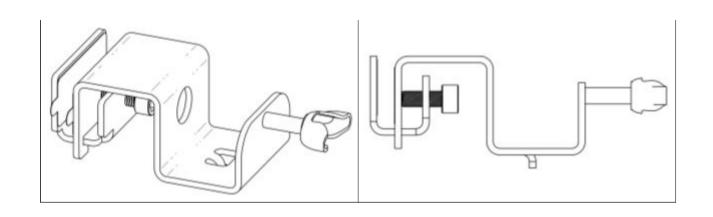
'와 같이 4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주금속판, 고정금속판 및 창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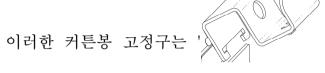
결합시킨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금속판의 수직판 하단 부분에 고정금속판의 바닥판 부분과 결합하기 위하여 결합부를 형성하고 그 결합부에 고정금속판을 끼워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을 일체로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으로 1개의 볼트만으로도 창틀에 고정할 수 있는 블라인드 고정구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의 형상 및 모양, 주금속판의 수직판과 고정금속판의 바닥판이 끼워져 결합하는 형상및 1개의 머리가 큰 볼트 형상이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을 여러 개의 나사로 결합하는 커튼 또는 블라인드 브래킷(갑 제5호증)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금속판의 수직판에 결합부를 형성하여 주금속판과 고정금속판을 일체로 형성하면서 하나의 볼트로 결합시킨 블라인드 고정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서확인대상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19. 12. 2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30-1037943호에 '커튼봉 고정구'에 관한 디자인이 게재되어 있음을 인정할수 있다.

커튼봉 고정구의 사시도

커튼봉 고정구의 정면도





'와 같이 'ㄹ'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와 같이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이 하나의 볼트로 결합한다. 그런데 이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간단한 'ㄱ'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으로 구성되고 양 금속판이 일체로 결합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ㄹ'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을 하나의 볼트로 결합하는 커튼봉 고정구(갑 제6호증)가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ㄱ'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을 하나의 돌트로 결합하는 커튼봉 고정구(갑 제6호증)가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ㄱ'자 형상의 주금속판과 'ㄷ'자 형상의 고정금속판이 결합하는 블라인드 고정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커튼봉 고정구(갑 제6호증)에 커튼 또는 블라인드 브래킷(갑 제5호증)의 주금속판을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커튼 또는 블라인드 브래킷(갑 제5호증)의 주금속판은 단순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금속판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로 형성되는 결합 방식이 달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커튼봉 고정구(갑제6호증)에 커튼 또는 블라인드 브래킷(갑제5호증)의 주금속판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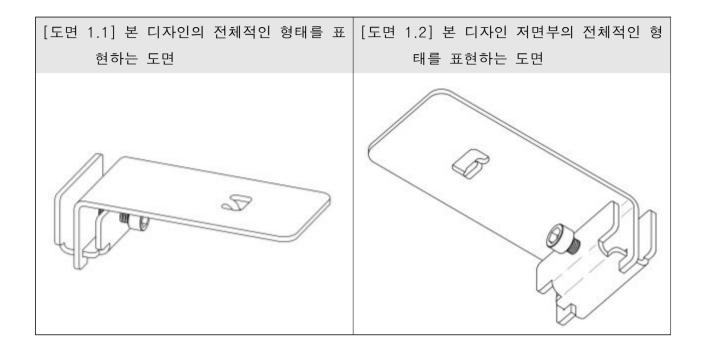
###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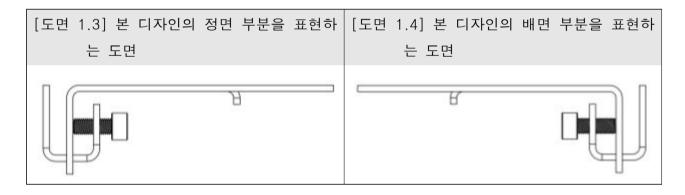
###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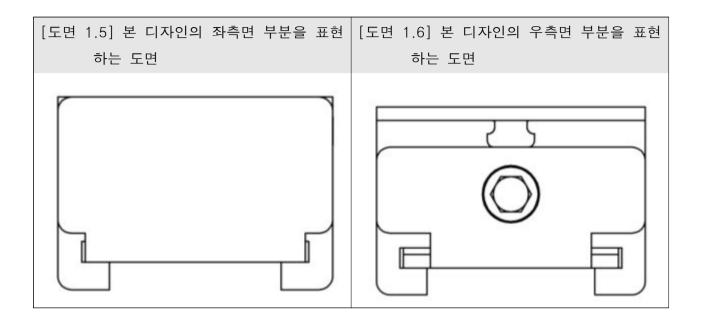
- 1. 재질은 금속재임.
- 2. 본 디자인은 참고도면 1.1과 같이 창틀의 손상 없이 결합되는 블라인드 고정구임.
-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2는 본 디자인 저면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8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참고도면 1.1 내지 참고도면 1.2는 클립 고정부가 분리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1.3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1.4는 블라인드 고정용 클립이 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사용상태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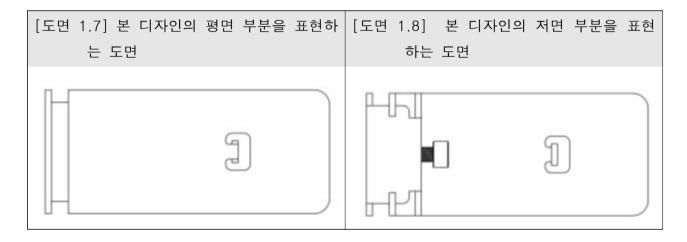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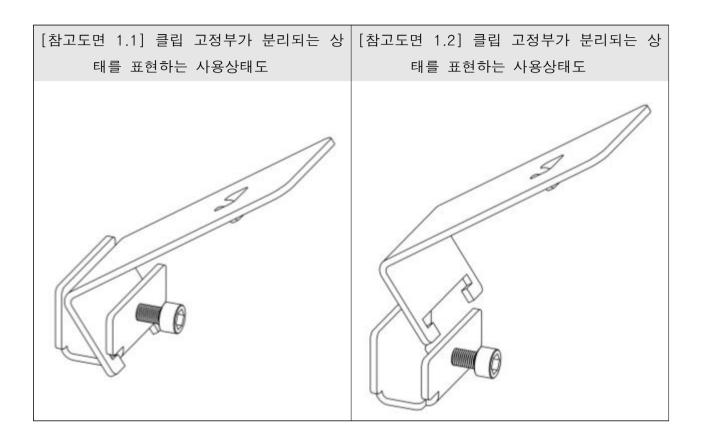
본 디자인 '블라인드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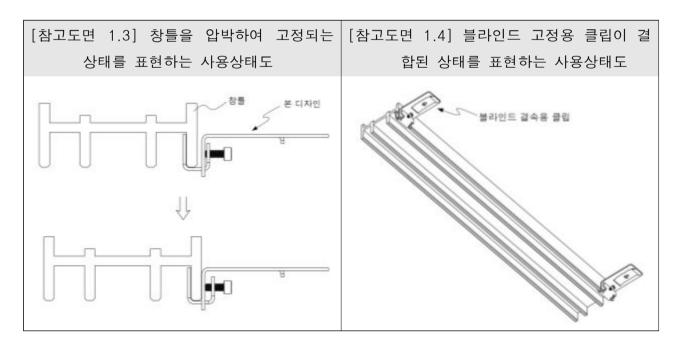












# [별지 2]

# 확인대상디자인

【물품의 명칭】블라인드 고정구



